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7호 2018. 2. 2(금)

공고

○남원시 공고 제2018- 171호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----	1
○남원시 공고 제2018- 172호 도로사용개시(폐지)에 관한 공고 -----	13
○남원시 공고 제2018- 189호 도로공고(남원시 용정동 567-1) -----	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18 - 171호

『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2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
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(안 제2조)
- 나.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 (안 제12조의2)
- 다.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 (안 제13조제1항)
- 라 기술검토 수당 개정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2항)
- 마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5일까지 의견

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재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재정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307), FAX(063-620-6710) 및
직접방문 등

4.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
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[붙임]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01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재 정 과 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 으
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
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(안 제2조)
- 나.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 (안 제12조의2)
- 다.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 (안 제13조제1항)
- 라 기술검토 수당 개정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2항)
- 마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
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8. 01. 26. ~ 2018. 02. 15. (20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”로, “같은 법 시행령 제59조, 제63조의 규정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57조, 제59조”로 한다.

제2조 제2항제6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여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제4호 중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법 시행령 제10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8조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법 시행령 제107조”를 “영 제107조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 (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해제) 시장은 영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, 별표 2 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일 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나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별표 1과 같이”로, “기술검토 수당을 지급”을 “지급”으로 한다.

별표 1,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기술검토 수당 등 지급기준(제13조 관련)

구	분	금 액(원)	비 고
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	기 술 검토수당	200,000	
주민참여감독자	수 당	20,000	* 공사당 10회 이내

〔별표 2〕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(제12조의2 관련)

1. 공 사 명 :
2. 계 약 금 액 :
3. 계약자(시공사) :
4. 공 사 기 간 :
5. 참여 감독기간 :
6. 준 공 예정일 :
7. 주요 감독사항
-
-
-

「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상기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민참여감독자 직 위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남 원 시 장 귀하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(생략)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번만 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- 1.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 입찰참가자격 제한,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제6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공사·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.
-----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-----.

제4조(기능) ①-----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.

- 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08조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소위원회) ①-----

----- 영 제107조-----

용역·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
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
있다.

② ~ ⑧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위원
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
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
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
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
수당·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
지급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 20
16.5.13.>

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
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
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
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
다.

--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 (주민참여감독자 위촉
및 위촉해제) 시장은 영 제58조
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위촉
및 위촉 해제하고, 별표 2 서식
에 따라 준공검사일 전까지 감
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제13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위원
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
위원에게는 「남원시 각종 위원
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
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-----

-- 경우에나 영 제59조에 따라
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
에 따른 실비를 별표 1과 같이
예산의 범위에서 -----지급--.

**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
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**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**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남원시 공고 제2018 - 172호

도로사용개시(폐지)에 관한 공고

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(폐지)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01월 29일

공고자 : 남원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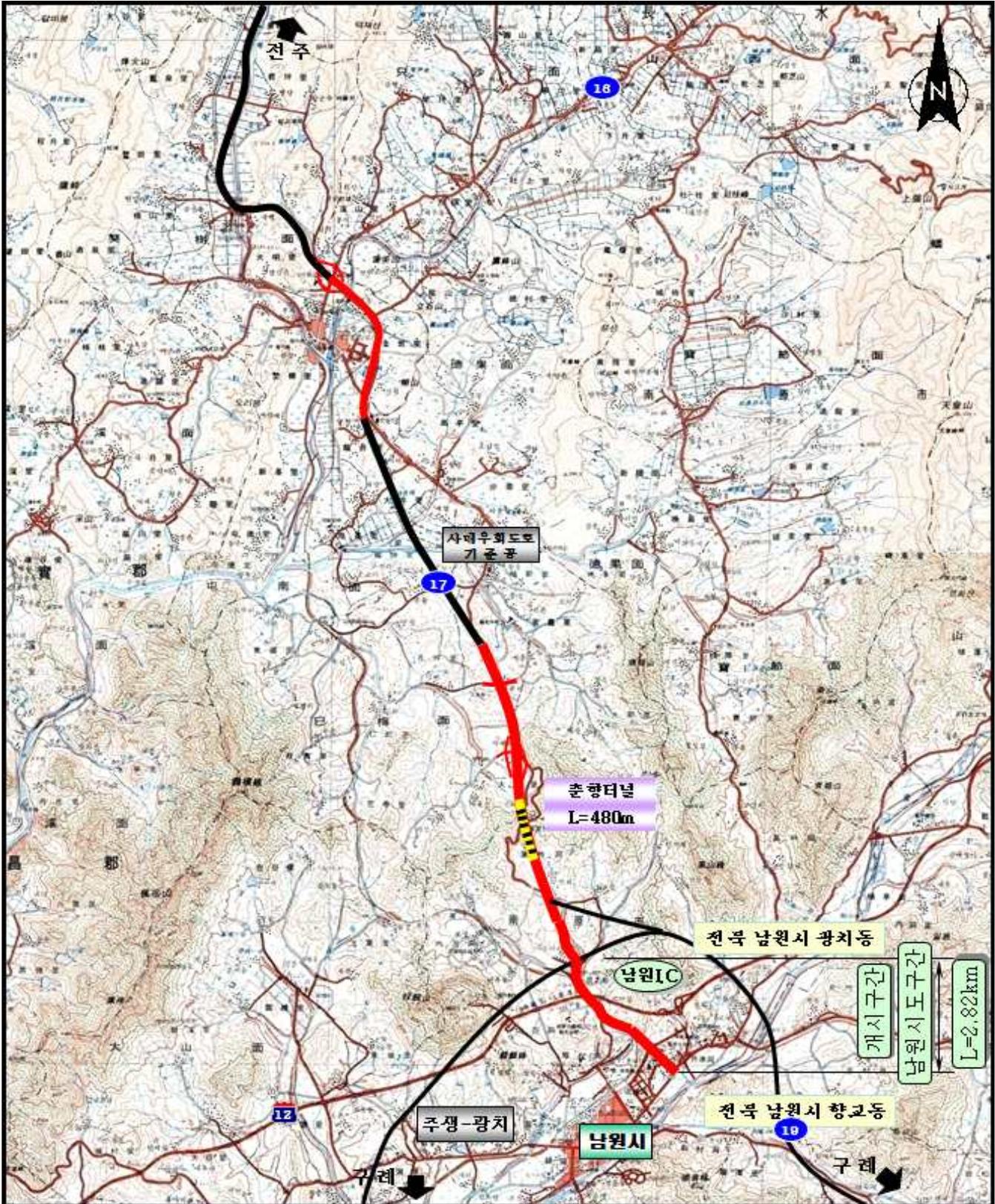
1. 도로의 종류 : 시도
2. 노 선 명 : 남원시 시도1호선
3. 사용개시(폐지)구간

구 분		행 정 구 역		연장(km)	비 고
개시 구간	시도1 호선	시 점	전북 남원시 향교동 산34	2.82	4차로
		종 점	전북 남원시 광치동 821		

4. 주요 통과지 : 전북 남원시 향교동
전북 남원시 광치동
5. 전 용 구 간 : 전북 남원시 향교동 산34
~ 전북 남원시 광치동 821
6. 중 용 구 간 : 해당없음
7. 개시(폐지)일시 : 2018년 01월 29일
8. 비 고 : 도면과 지형도는 남원시청(☎063-620-6526)
및 오수-월락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(☎063-636-0681)
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.

첨부서류 : 5만분의 1이상 지형도

위 치 도 [오수-월락]



◎ 남원시 공고 제 2018 -189호

도 로 공 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2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18-3	남원시 용정동 567-1(임)	허*석	2018-건축과- 신축신고-32	50.11	6~8	407	남 원 시 용 정 동 567-1, 산 12-1	197, 210	정*인